

현행					개정 (안)				
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98. 10. 8)					3.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생략)					(생략) "변동없음"				

현행					개정 (안)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생략)					(생략) "변동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1.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7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병찬)

가. 폐지이유

- 종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99. 2. 8 법률 제5839호)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 폐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공중위생법이 1999년 2월 8일자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고, 1999년 12월 27일자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2000년 3월 16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에 수수료 종목을 신설·등재하게 됨으로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년월일 : 2000. 10.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종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99. 2. 8 법률 제5839호)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공중위생법 폐지('99. 2. 8)
 - 공중위생관리법 제정('99. 2. 8. 법률 제5839호)
 - 종전 공중위생관련업이 허가 또는 신고에서 통보제로 변경
-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사용승인 절차 및 제한조건 등을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구민들이 동 회관을 좀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나. 주요내용
 - 사용승인절차 간소화(구민회관운영 위탁 및 15일 이상 임대시 구의회 사전승인 → 삭제)
 - 사용료반환제한 완화(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취소 신청한 후 구청장이 이유있을 때 → 삭제)
 - 사용자설비규정 완화 (사용자가 설비 설치시 사전에 구 승인 → 경미한 사항은 예외)
 - 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